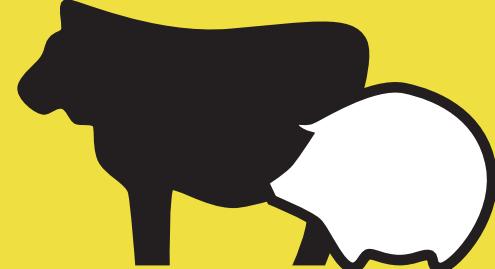


육류 제품의 해외 반출에 대해서



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에서 반출할 때에는 **동물검역소의 검사를** 받아야 하는 물건이 있으며, 중국·한국 등 해외로 반출할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.



동물검역이 필요한 물건의 예

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

수입국과 수출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, 동물검역소의 증명서가 필요한 물건



야생동물 유래 식품 및 축산물



가축의 정액, 수정란



살아 있는 가축, 반려동물(개, 고양이)



※이것들 외에도 동물검역이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.



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,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(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).

살아 있는 동물이나 육류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,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

<http://www.maff.go.jp/aqs/index.html>

자세한 내용은
홈페이지에서

